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83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김성범 · 주철현 · 박정현
이춘석 · 이학영 · 한민수
윤준병 · 허 영 · 이건태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39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최대 21명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배치와 운용은”을 “정원, 배치 및 운용은”으로 한다.

- ③ 정책연구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u>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u>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 ----- ----- ----- ----- ----- ----- <u>-- 도의회의원의 정수의 범위에서</u> -----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u>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u>
	④ ----- <u>정원, 배치 및 운영은</u> ----- ----- -----.